

忠清北道公有財產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專長告

1. 提出者：忠清北道知事

2. 提出日字 및 回附日字

가. 提出日字 : 1993年 1月 29 日

나. 回附日字 : 1993年 1月 29 日

3. 提案理由

公有財產을 效率的으로 管理하기 위하여 公有財產管理計劃에 貸付 및 使用許可를 有償인 경우는 除外시키고 無償인 境遇만 包含하도록 하며 重複된 文句 削除 및 地方議會의 報告期日 延長等 不合理한 점을 改善하기 위하여 條例改正

4. 主要骨子

- 貸付料의 納期를 各號에 納期日을 明示한 것을 但書에도 重複 明示하여 但書를 削除
- 公有財產管理計劃에 貸付 및 使用許可中 有償貸付 또는 有償使用許可除外

- 公有財產管理計劃에 包含되지 않은 無償貸付 또는 無償使用許可와
慶川敷地의 取得 및 處分의 地方議會 報告 期日을 當該年度 12月
31日까지에서 翌年度 1月 31日까지로 變更
- 官舍의 區分中 3級官舍에 企劃管理室長等 職位를 明示한 것을 3級
以上 公務員으로 變更

5. 檢討意見

《 報告者 : 專門委員 李 清 》

忠清北道 公有財產 管理條例中 改正條例案을 檢討한 결과,

公有財產의 保存 및 管理業務를 效率的으로 運營하고자 既存 條例案의
矛盾點을 插入 및 修正하여 補完코자 하는 것으로서,

主要 改正內容을 살펴보면,

첫째, 條例 第26條의 但書規程에서 契約締結 年度의 貸付料는 契約締結
日로부터 30日 以内에 納入토록 되어 있으나,

同條 第1項 第1號에는 耕作 目的으로 貸付한 財產에는 11月 1日
부터 12月末 까지로 되어있어 重複으로 明示되어 있는 반면,

第23條 第2項에는 農地의 所得金額으로 貸付料를 算定하게 되어
있는바,

但書規程과 所得金額 算出時期가 一致되지 않는 問題點이 있으므로
但書規程은 當然히 削除되어야 할것으로 料思되며,

둘째, 第37條 第3項의 規程에 公有財產을 取得, 處分하였을 境遇에는
當該年度 12月 31日까지 地方議會에 報告하도록 되어 있으나,

地方議會 定期會가 12月末 以前 閉會됨으로 議事日程과 報告
期日이 不合理하므로,

公有財產 管理計劃 報告가 內實있게 이루워 지도록 每年 1月
31日까지 1個月 延長하여 줌이 바람직 하며,

第39條의 公有財產 管理計劃 對象을 取得, 處分및 交換等을 無償
貸付및 無償 使用許可로 字句를 修正하는것은 公有財產 管理計劃을
具體化하여 明示한 것으로 思料됨은 물론,

第51條 第3號 3級官舍의 區分에서 職位를 明示하여 特定人에게만
惠澤이 賦與되었던 것을 職級으로 變更하여 均等하게 惠澤을 賦與
코져 修正하려는 것으로 判斷됨.

위에서 檢討하여 본 바와같이 本 改正條例案은 地方自治制 實施에 따라
現 實情에 附合되도록 改正코져 하는 것으로서 原案可決 함이 타당한
것으로 思料됨.